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69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3월 23일
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서윤기·최판술·김제리·서영진·
신원철·우형찬·장우윤·김상훈·
김인호·최영수·김광수(도봉)
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, 창업을 위한 교육·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3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청년상인의 육성사업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청년상인의 육성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“청년상인의 육성사업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청년상인의 육성사업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